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효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 1382

발의연월일: 2017. 9. 6.

발 의 자 : 이효상 · 김영길 · 서경화

천태 · 김순점 · 강혜순

권태호 · 김경환 · 이복희9명

1. 개정이유

- 「사회보장기본법」개정 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정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조례의 개정이 필요함.
- 「울산광역시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」의 명칭과 조문 일 부를 개정함으로서 저소득층의 의료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명칭을 "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"로 변경함.

- 나. 제1조(목적)의 지원 보험료에 "노인장기요양보험료"를 명시함.
- 다. 제2조(정의)에 "만 68세"를 "만65세"로 변경함
- 라. 제2조(정의)에 "다자녀세대"정의를 명시함
- 마. 제3조(지원대상)에 다자녀세대를 추가함.

3. 근거법규

-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-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9조(사회보장을 받을 권리)
-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5조(운영원칙)
-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(협의 및 조정)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조 (기본원칙)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9조 (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)
- 4. 조 례 안: "따로 붙임"

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"를 "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국민건강보험료"를 "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(이하 "보험료"라 한다)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"만68세"를 "만65세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"다자녀세대"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.

제3조 "국민건강보험료(이하 "보험료"라 한다)"를 "보험료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다자녀세대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<u>국민건강보험료</u> 지원 조례	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<u>국민건강보험료 및</u>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질병·노령 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 법」 제12조의3 및 「의료급여 법」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 게 <u>국민건강보험료</u> 를 지원함으로 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
 노인세대라 함은 주민등록상 만68세 이상 어르신만 거주하 는 세대를 말한다. 	1 <u>만6</u> <u>5세</u>
2. · 3. (생 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"다자녀 세대"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 대를 말한다.
제3조(지원대상) <u>국민건강보험료</u> (이하 "보험료"라 한다)	제3조(지원대상) <u>보험료</u>
 1. ~ 3. (생 략)	 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다자녀세대

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- 1. 비용발생 요인
 - 「울산광역시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」 (안 제2조, 제3조)
 - (안)제2조(정의)
 - 1. 노인세대라 함은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어르신만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.
 - 4. 다자녀세대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.
 - (안)제3조(지원대상)
 - 1. 노인세대
 - 4. 다자녀세대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인 자 중 현재 지원하고 있는 세대를 기준으로 함(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참고)
- 비용추계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의 평균으로 매년 적용함.
- 추계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으로 한다.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 천원)

구분	연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합계
지출	건강보험료	11,500	13,300	14,000	14,800	15,600	69,200
총비	비용	11,500	13,300	14,000	14,800	15,600	69,200

Ⅱ.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

(단위: 천원)

구분	연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합계
7 nl	보조금						
국비	특별보조금						
,	시비						
7	기금						
<u> </u>	구비	11,500	13,300	14,000	14,800	15,600	69,200
기타							
합계		11,500	13,300	14,000	14,800	15,600	69,200

• 비용추계 방법

가. 인원추계: 15%(68세 이상 전체 대상자 / 지원대상자) + 다자녀 3세대 추정

나. 금액추계: 세대당 7,200원(현재 지원금액 / 지원대상자)

• 비용추계 사용 자료: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

(제목: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세대 명단파악 제출요청 회신 ,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 부지사 자격징수부-5639(2017, 8,23,)호)

1. 부대의견 : 세출예산(국민건강보험료 지원)은 추정비로서, 여건에 따라 변동할 수 있

음

2. 협의사항 : 없음

3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사회복지과 김지영
연락처	052-290-3583

의 안 번 호

1382

【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7. 9. 6.(목)

나. 제 출 자 : 이효상 의원 외 8명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9. 8.(금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9. 18.(월)

2. 제**안설명 요지**(이효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사회보장기본법」개정 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 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정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효 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.
- 「울산광역시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」의 명칭과 조문 일부를 개정함으로서 저소득층의 의료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 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. 조례 명칭을 "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"로 변경함
- 2. 지원 보험료에 "노인장기요양보험료"를 명시함.(안 제1조)
- 3. 노인세대를 "만 68세"를 "만65세"로 하고, "다자녀세대"정 의를 명시함(안 제2조)
- 4. 지원대상에 다자녀세대를 추가함(안 제3조)

다. 근거법규

1.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
- 2.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9조(사회보장을 받을 권리)
- 3.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5조(운영원칙)
- 4.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(협의 및 조정)
- 5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기본원칙)
- 6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9 조(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원기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사회보장기본법」및「사회보장급여의 이 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를 추가하는 것으로,
- O 주요내용으로는

조례 제명을 「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」로 하고,

노인세대를 노인연령 기준에 맞게 만65세 이상으로 하고,

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를 추가로 정하는 것임.

○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